

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법률 제5839호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되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업종의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된 수수료 조례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·미용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의 수수료규정을 삭제(안 별표1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개정임
-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'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업종의 각종신고사항을 통보사항(공중위생관리법 제3조)으로 변경하였고, 공중위생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규정도 삭제하였음.
-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법 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 및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